

|              |                |
|--------------|----------------|
| 의안번호         | 제 727 호        |
| 의 결<br>연 월 일 | 년 월 일<br>(제 회)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727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2. 주요내용

- 제3조(시·도지사의 책무)
  -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육성을 위한 필요시책 수립·추진
- 제4조(설립인가 신청)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지원 조건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충청북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충청북도 지회(支會)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 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도지사는 설치인가를 할 때에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설치인가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은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br>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  |           |
|----------------|--|-----------|
| 신청인<br>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li> <li>2. 설립취지서 1부</li> <li>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li> <li>4. 정관 2부</li> <li>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li> <li>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li> <li>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li> <li>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li> <li>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li> <li>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li> <li>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li> <li>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li> </ol> <p>※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p> | 수수료<br>없음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제 호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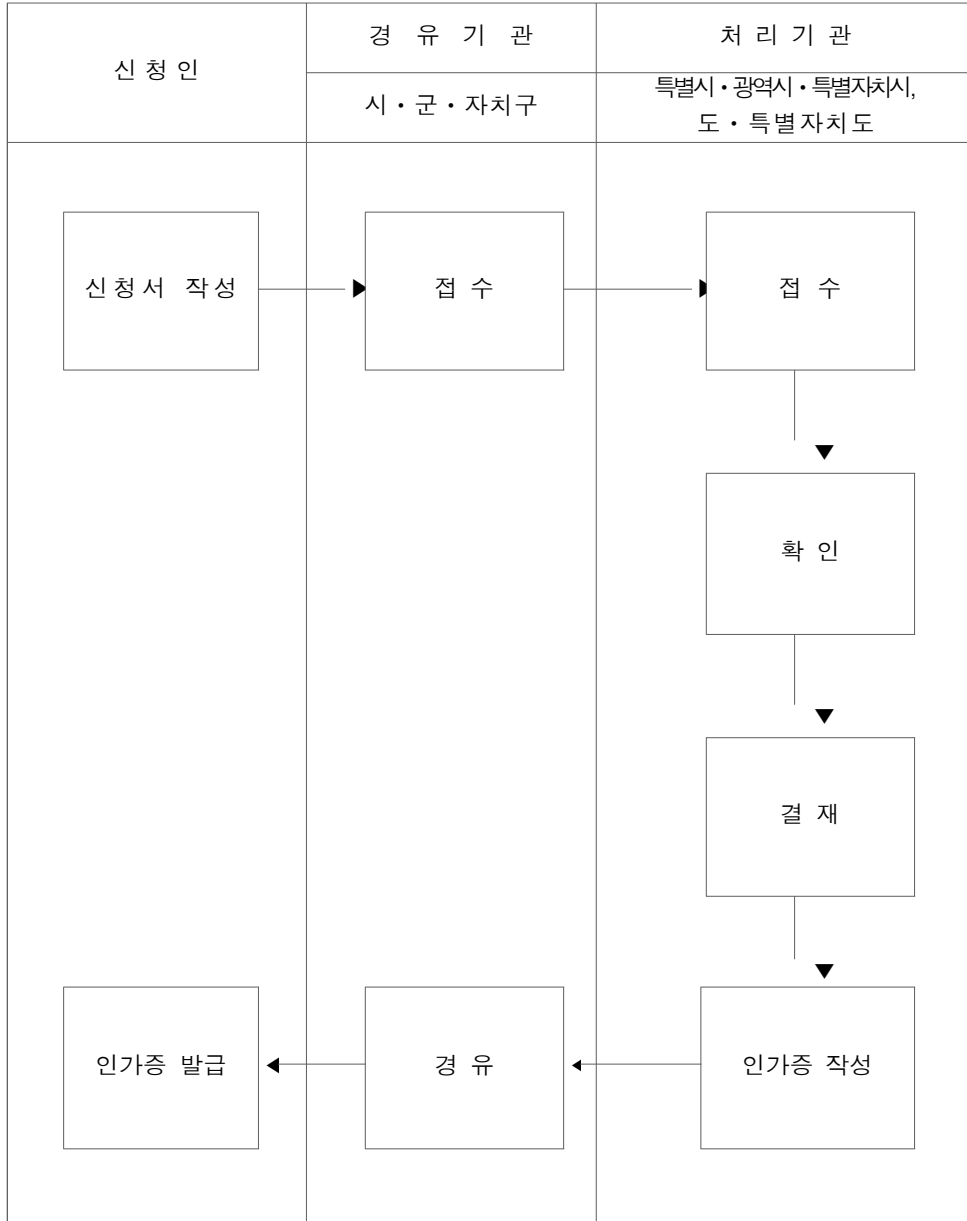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직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br>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      |             |
| 분원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   |           |
|-------------|---|-----------|
| 신청인<br>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원설치취지서 1부</li> <li>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li> <li>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li> <li>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li> <li>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li> <li>6. 분원시설현황</li> </ol> | 수수료<br>없음 |
|-------------|---|-----------|

제 호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

1. 명 칭:

2. 소재지

|    |  |
|----|--|
| 본원 |  |
| 분원 |  |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직인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수행

## 3. 관련조문

- 안 제3조(시·도시자의 책무)
- 안 제9조(보조금 지원 등)

##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추계 결과    | 재원조달방원        |
|-----------------------------|----------|---------------|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제3조 및 제9조) |          |               |
| ①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 65,506천원 | - 도비 65,506천원 |
| ② 충북문화원연합회지 발간              | 9,000천원  | - 도비 9,000천원  |
| ③ 충북문화원 국제문화교류              | 20,000천원 | - 도비 20,000천원 |
| ④ 충북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 20,000천원 | - 도비 20,000천원 |
| ⑤ 충북 학생 국악경연대회              | 16,200천원 | - 도비 16,200천원 |
| ⑥ 충북 문화의 날 행사 및 생활문화축제      | 30,000천원 | - 도비 30,000천원 |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 구 분                      | 계       | 1차년도<br>(2021년) | 2차년도<br>(2022년) | 3차년도<br>(2023년) | 4차년도<br>(2024년) | 5차년도<br>(2025년) |
|--------------------------|---------|-----------------|-----------------|-----------------|-----------------|-----------------|
| 세 출                      | 828,095 | 160,706         | 164,816         | 166,152         | 167,515         | 168,906         |
| 문화예술단체<br>운영지원           | 340,895 | 65,506          | 66,816          | 68,152          | 69,515          | 70,906          |
| 충북문화원연합회지<br>발간          | 49,000  | 9,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충북문화원<br>국제문화교류          | 10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충북 청소년 내고장<br>문화유적 순례대행진 | 10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충북 학생<br>국악경연대회          | 88,200  | 16,2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 충북 문화의 날 행사<br>및 생활문화축제  | 1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

## 관 계 법 령

###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 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18., 2020. 6. 9.>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



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 지방일괄이양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4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